

## 1. 개정이유

국가표준 통합 및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에 따라 현행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의 별표 KN 시험방법을 국가표준(KS)으로 일부 전환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(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9-132호, 2019.12.31.)의 별표 KN 시험방법을 국가표준(KS)으로 대체하여 개정(안) 마련(안 제3조, 제4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◎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0-105호

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23일

국립전파연구원장

「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」 일부 개정안

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별표 1-1의 KN 16-1-1”을 “KS C 9816-1-1:2020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별표 1-2의 KN 16-1-2를”을 “KS C 9816-1-2:2020을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별표 1-3의 KN 16-1-3”을 “KS C 9816-1-3:2017”로 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별표 1-4의 KN 16-1-4를”을 “KS C 9816-1-4:2020을”로 한다.

제3조제5항 중 “별표 1-5의 KN 16-1-5를”을 “KS C 9816-1-5:2020을”로 한다.

제3조제6항 중 “별표 1-6의 KN 16-2-1”을 “KS C 9816-2-1:2020”로 한다.

제3조제7항 중 “별표 1-7의 KN 16-2-2를”을 “KS C 9816-2-2:2020을”로 한다.

제3조제8항 중 “별표 1-8의 KN 16-2-3”을 “KS C 9816-2-3:2020”으로 한다.

제3조제9항 중 “별표 1-9의 KN 16-2-4를”을 “KS C 9816-2-4:2017”로 한다.

제3조제10항 중 “별표 1-10의 KN 16-2-5를”을 “KS C 9816-2-5:2020을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1항 중 “별표 1-11의 KN 61000-3-2/61000-3-12를”을  
“KS C 9610-3-2:2020/KS C 9610-3-12:2020을”로 한다.

제3조제12항 중 “별표 1-12의 KN 61000-3-3/61000-3-11를”을  
“KS C 9610-3-3:2020/KS C 9610-3-11:2017을”로 한다.

제3조제13항 중 “별표 1-13의 KN 61000-4-2를”을 “KS C 9610-4-2:2017을”로 한다.

제3조제14항 중 “별표 1-14의 KN 61000-4-3”을 “KS C 9610-4-3:2017”로 한다.

제3조제15항 중 “별표 1-15의 KN 61000-4-4를”을 “KS C 9610-4-4:2020을”로 한다.

제3조제16항 중 “별표 1-16의 KN 61000-4-5를”을 “KS C 9610-4-5:2020을”로 한다.

제3조제17항 중 “별표 1-17의 KN 61000-4-6”을 “KS C 9610-4-6:2020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8항 중 “별표 1-18의 KN 61000-4-8”을 “KS C 9610-4-8:2017”로 한다.

제3조제19항 중 “별표 1-19의 KN 61000-4-11”을 “KS C 9610-4-11:2020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0항 중 “별표 1-20의 KN 61000-4-9을”를 “KS C 9610-4-9:2019를”로 한다.

제3조제21항 중 “별표 1-21의 KN 61000-2-2를”을 “KS C 9610-2-2:2017을”로 한다.

제3조제22항 중 “별표 1-22의 KN 61000-2-4를”을 “KS C 9610-2-4:2017을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별표 2의 KN 11을”를 “KS C 9811:2019를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별표 2-2의 KN 60601-1-2를”를 “KS C IEC 60601-1-2:  
2007을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별표 2-3의 KN 60974-10”를 “KS C 9974-10:2020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의2 중 “별표 2-4의”를 삭제한다.

제4조제3항의3 중 “별표 2-5의”를 삭제한다.

제4조제3항의4 중 “별표 2-6의 KN 60255-26”를 “KS C IEC 60255-26:2020”로 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별표 3의 KN 41”을 “KS C 9990:2017”로 한다.

제4조제4항의2 중 “별표 3-2의 KN 301 489-51”를 “KS C 9995:2021”로 한다.

제4조제5항 중 “별표 4의 KN 14-1”을 “KS C 9814-1:2020”으로 한다.

제4조제6항 중 “별표 4-2의 KN 14-2를”을 “KS C 9814-2:2020을”로 한다.

제4조제7항 중 “별표 5의 KN 15”를 “KS C 9815:2019”로 한다.

제4조제8항 중 “별표 5-2의 KN 61547”을 “KS C 9547:2020”으로 한다.

제4조제9항 중 “별표 6의”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1항 중 “제11항”을 “제10항”으로 하고, “별표 7의 KN 60을”을  
“KS X 3141:2015를”로 한다.

제4조제12항 중 “제12항”을 “제11항으로 한다.

제4조제12항제1호 중 “별표 8-1의 KN 301 489-1”을 “KS X 3124:2020”으로  
한다.

제4조제12항제3호 중 “제3호”를 “제2호”로 하고, “별표 8-3의 KN 301 489-17”을  
“KS X 3126:2020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2항제4호 중 “제4호”를 “제3호”로 하고, “별표 8-4의 KN 301 489-52”를  
“KS X 3129:2020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2항제5호 중 “제5호”를 “제4호”로 하고, “별표 8-5의 KN 301 489-6을”를  
“KS X 3128:2014를”로 한다.

제4조제12항제6호 중 “제6호”를 “제5호”로 하고, “별표 8-6의 KN 301 489-13을”를

“KS X 3131:2014를”로 한다.

제4조제12항제7호 중 “제7호”를 “제6호”로 하고, “별표 8-7의 KN 301 489-5”를 “KS X 3127:2014”로 한다.

제4조제12항제8호 중 “제8호”를 “제7호”로 하고, “별표 8-8의 KN 301 489-3”을 “KS X 3125:2020”로 한다.

제4조제12항제9호 중 “제9호”를 “제8호”로 하고, “별표 8-9의 KN 301 489-9”를 “KS X 3130:2014”로 한다.

제4조제12항제10호 중 “제10호”를 “제9호”로 하고, “별표 8-10의 KN 301 489-50”을 “KS X 3135:2020”로 한다.

제4조제12항제11호 중 “제11호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”를 “제10호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(TRS)”로 하고, “별표 8-11의 KN 301 489-18을”를 “KS X 3132:2014를”로 한다.

제4조제12항제12호 중 “제12호”를 “제11호”로 하고, “별표 8-12의 KN 301 489-15”를 “KS X 3136:2014”로 한다.

제4조제12항제13호 중 “제13호”를 “제12호”로 하고, “별표 8-13의 KN 301 489-2”를 “KS X 3137:2014”로 한다.

제4조제12항제14호 중 “제14호”를 “제13호”로 하고, “별표 8-14의 KN 301 489-27”을 “KS X 3134:2014”로 한다.

제4조제12항제15호 중 “제15호”를 “제14호”로 하고, “별표 8-15의 KN 301 489-32”를 “KS X 3138:2015”로 한다.

제4조제12항제16호 중 “제16호”를 “제15호”로 하고, “별표 8-16의 KN 301 489-20”을

“KS X 3139:2014”로 한다.

제4조제13항 중 “제13항”을 “제12항”으로 하고, “별표 9의 KN 62040-2”를 “KS C 9040-2:2017”로 한다.

제4조제14항 중 “제14항”을 “제13항”으로 하고, “별표 10의 KN 60947”를 “KS C IEC 60947-1:2017/KS C IEC 60947-2:2019/KS C IEC 60947-4-1:2016”로 한다.

제4조제15항 중 “제15항”을 “제14항”으로 하고, “별표 11의 KN 32”를 “KS C 9832:2019”로 한다.

제4조제16항 중 “제16항”을 “제15항”으로 하고, “별표 11-2의 KN 35을”를 “KS C 9835:2019를”로 한다.

제4조제17항 중 “제17항”을 “제16항”으로 하고, “별표 12의 KN 61800-3을”를 “KS C 9800-3:2017를”로 한다.

제4조제18항 중 “제18항”을 “제17항”으로 하고, “별표 13의 KN 12015을”를 “KS B 6955:2019를”로 한다.

제4조제19항 중 “제19항”을 “제18항”으로 하고, “별표 13-2의 KN 12016을”를 “KS B 6945:2019를”로 한다.

제4조제20항 중 “제20항”을 “제19항”으로 하고, “별표 14의”를 삭제한다.

제4조제22항 중 “제22항 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”를 “제20항 무선전력전송기기”로 하고, “별표 16의 KN 17”을 “KS X 3143:2020”로 한다.

제4조제23항 중 “제23항”을 “제21항”으로 하고, “별표 17의 KN 61000-6-3”을 “KS C 9610-6-3:2017”로 한다.

제4조제24항 중 “제24항”을 “제22항”으로 하고, “별표 17-2의 KN 61000-6-1을”를  
“KS C 9610-6-1:2019를”로 한다.

제4조제25항 중 “제25항”을 “제23항”으로 하고, “별표 18의 KN 61000-6-4를”을  
“KS C 9610-6-4:2017을”로 한다.

제4조제26항 중 “제26항”을 “제24항”으로 하고, “별표 18-2의 KN 61000-6-2”을  
“KS C 9610-6-2:2019”로 한다.

제4조제27항 중 “제27항”을 “제25항”으로 하고, “별표 19의 KN 100을”를  
“KS C 9991:2019를”로 한다.

제4조제28항 중 “제28항”을 “제26항”으로 하고, “별표 20의 KN 101을”를  
“KS C 9992:2019”로 한다.

제4조제29항 중 “제29항”을 “제27항”으로 하고, “별표 21의 KN 160을”를  
“KS C 9993:2019를”로 한다.

제4조제30항 중 “제30항”을 “제28항”으로 하고, “별표 22의 KN 15194”를  
“KS C 9994:2021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공고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공고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과적합성 시험방법 제3조·제4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을 한 경우에는 제3조·제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